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6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윤준병 · 임미애 · 전용기
이정문 · 송옥주 · 문대림
서삼석 · 김 윤 · 이성윤
서미화 · 문금주 · 박 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
3. 농지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u>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u> <u>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u> <u>3. 농지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u> <u>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u>

	<u>이 없을 것</u> <u>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u> <u>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u> <u>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u> <u>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u> <u>다.</u>
--	--